

# 환경영향평가 제도 일반

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

# 목 차

1

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요

2

환경영향평가의 종류

3

환경영향평가 절차

4

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는가?

# 1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개요

## ● 제도 정의

- 개발사업을 위한 행정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
-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, 예측, 평가
- 해로운 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
- 계획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원수단

# 1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개요

## ● 도입목적 [환경영향평가법 제1조]

-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,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도모  
[1981년 최초 국내 도입 시행]

- 선계획 후개발,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 유도
- 사전검증시스템을 통해 개발사업 타당성 제고
- 국토 전체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인 고려
-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개발 억제

# 1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개요

## ● 환경영향평가의 기능

- 정보 제공
- 합의 형성
- 유도 기능
- 규제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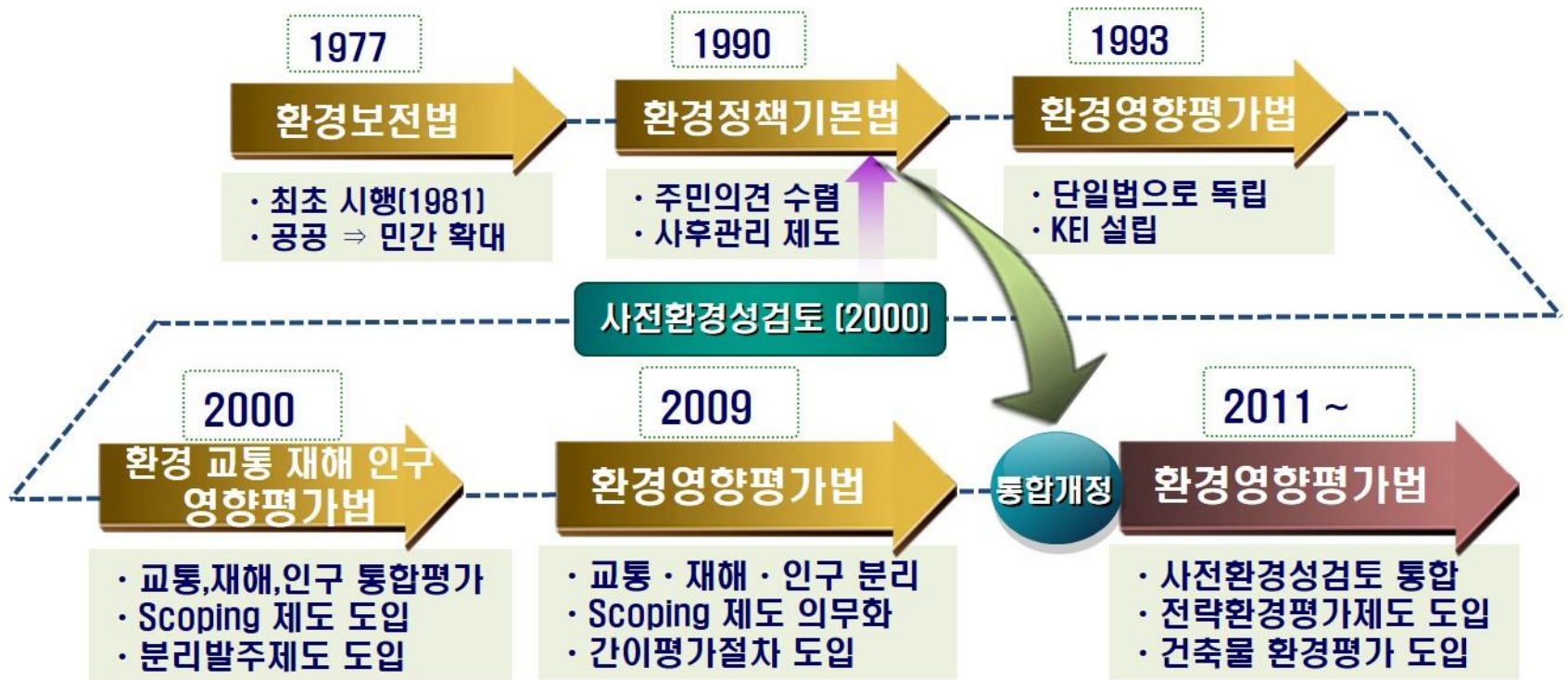
# 1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개요

## ● 환경영향평가의 효과

- 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 
환경정책수단
- 주민참여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절차적  
민주성 확보
- 환경영향 예측, 분석 기법 발전 및 환경오염저감  
환경기술개발 촉진

# 1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개요

## ●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천과정



## 2 환경영향평가의 종류

### ● 전략환경영향평가

- 상위단계의 정책 또는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 고려
- 환경보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등 해당계획의 적정성
- 입지의 타당성 검토, 대안분석 등



## 2 환경영향평가의 종류

### ● 환경영향평가

-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
- 세부 실행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 고려
-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평가
-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검토 등

## 2 환경영향평가의 종류

### ● 소규모환경영향평가

-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지역에서 시행
  - 소규모 개발사업 대상
  - 협의절차 간소화
- : 평가준비서, 항목 범위 결정, 초안작성 및 의견수렴, 재협의 및 변경협의 생략

### 3 대상사업

#### 전략환경영향평가

총 95개 계획  
(정책계획 17, 개발기본계획 78)

#### ● [정책계획]

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이나 지침 등을 제시하는 계획

[8개 분야 17개 계획]

예] 댐건설 장기계획  
도로정비기본계획  
권역별관광개발계획 등

### 3 대상사업

#### 전략환경영향평가

총 95개 계획  
(정책계획 17, 개발기본계획 78)

#### ● [개발기본계획]

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법령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

[17개 분야 78개 계획]

예] 도시 군 관리계획,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, 도로건설공사계획, 댐건설기본계획, 관광지 등의 지정, 소하천정비종합계획, 하천정비기본계획 등

### 3 대상사업

#### 환경영향평가

- 17개 사업분야 80개 개발사업( 15.12.30. 기준)
-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의 계획분야와 동일
  -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상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
  - 환경영향평가는 조성사업, 개발사업, 건설사업 또는 시설설치 사업 등 세부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평가

### **3** 대상사업

#### ❖ 참고 :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

- ✓ **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,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**
- ✓ **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**
- ✓ **매립사업, 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,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업**
- ✓ **택지, 공단조성 등 대기, 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**

### 3 대상사업

#### 소규모환경영향평가

- 보전관리지역 등 9개 분야 21개 개발사업
-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

### 3 대상사업

#### 소규모환경영향평가

- ❖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 지역
  - ✓ 국토관련법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
[자연환경보전지역 등], 개발제한구역 특별법, 하천법,  
소하천정비법, 지하수법 적용지역
  - ✓ 환경관련법 :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보호관리법,  
자연공원법, 습지보전법, 수도법 적용지역
  - ✓ 산림관련법 : 산지관리법, 초지법 적용지역
  - ✓ 그 외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발전이 파괴될 우려가 되는  
사업으로 조례로 정한 사업



## 4 평가항목

### ● 전략환경영향평가

- **정책계획** :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, 계획의 연계성, 일관성, 계획의 적정성, 지속성
- **개발기본계획**
  - 계획의 적정성  
[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, 대안의 적정성]
  - 입지의 타당성  
[자연환경 보전 측면, 생활환경의 안정성 측면]

# 4 평가항목

## ● 환경영향평가 : 6개 분야 21개 항목

대기환경(4)	수환경(3)	토지환경(3)	자연생태 환경(2)	생활환경(6)	사회 경제 환경(3)
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	수질 [지표, 지하] 수리, 수문 해양환경	토지이용 토양 지형, 지질	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	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위생 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	인구 주거 산업

❖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항목 중 자연환경자산, 기상, 온실가스, 수리 수문, 위생 공중보건 등을 제외 및 환경영향평가 보다 간소화 형태로 운영

5

# 전략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

## 정책 계획

정책계획의 구상  
[관계행정기관]

평가준비서 작성  
[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]

초안작성 **X** 주민의견 수렴

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 
[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]

검토 및 협의  
[환경부, 지방환경관서]

협의의견 통보  
[환경부 → 관계행정기관]

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 
[관계행정기관]

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 
[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]

## 개발 기본 계획

개발기본계획의 구상  
[관계행정기관]

평가준비서 작성  
[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]

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 
[주민 및 관계기관 **의견수렴**]

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 
[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]

검토 및 협의  
[환경부, 지방환경관서]

협의의견 통보  
[환경부 → 관계행정기관]

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 
[관계행정기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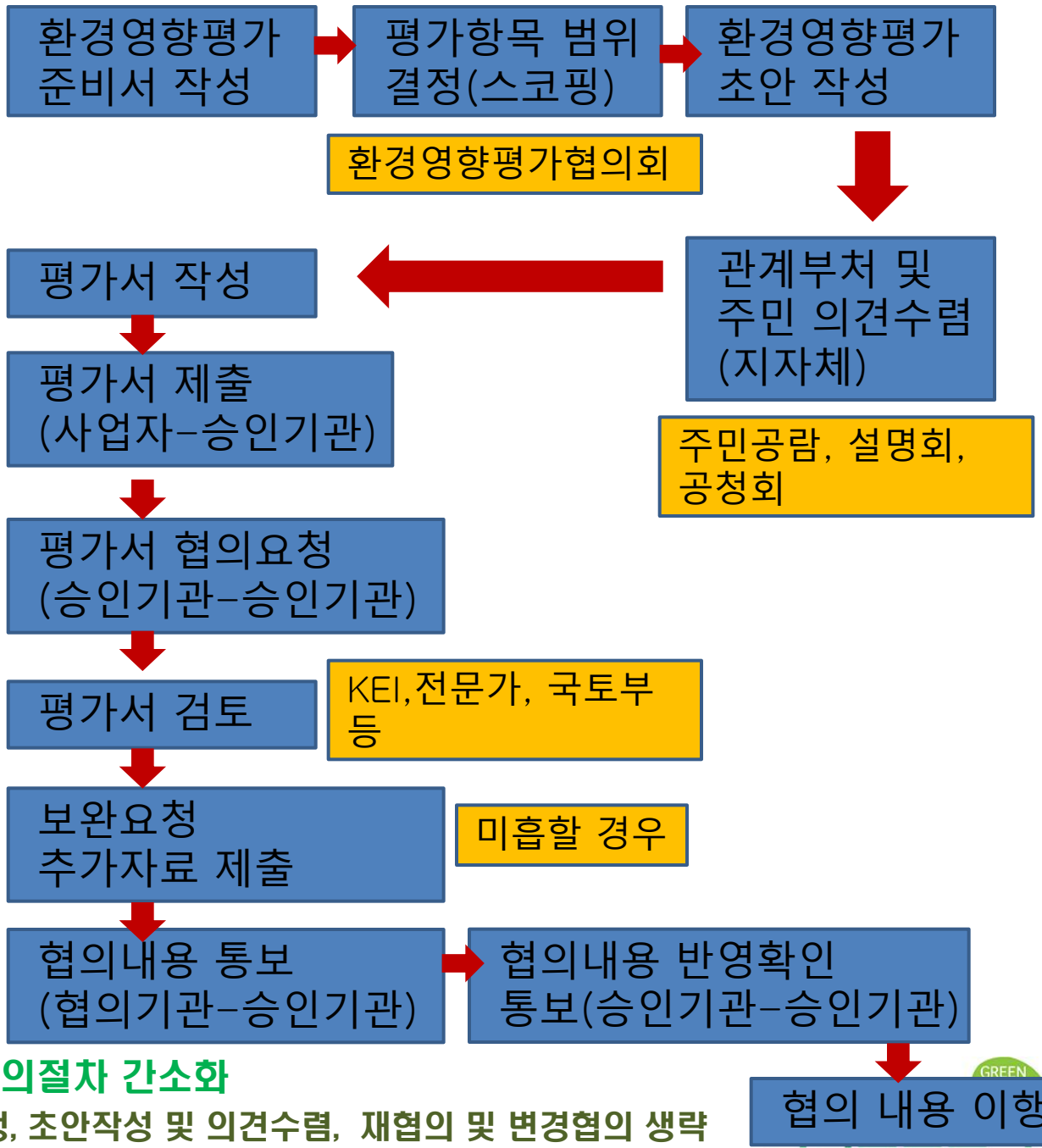
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 
[관계행정기관 → 환경부]

평가항목  
결정  
의견  
수렴

주민의견  
결과  
공개  
수

6

# 환경영향평가 절차



❖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

평가준비서, 항목 범위 결정, 초안작성 및 의견수렴, 재협의 및 변경협의 생략

GREEN  
협의 내용 이행

## 7 스코핑 제도

-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**“선택과 집중”** 차원에서 꼭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



스코핑 절차를 통해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라 **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항목 제외 가능**

[예시] 도로사업의 경우, 도심도로와 산간지역 도로는 소음 영향의 민감도에서 차이

## 8 스코핑 절차 및 방법

### ■ 스코핑 절차

평가준비서 작성 -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- 평가항목  
및 범위 등의 결정 - 결정내용 공개(14일 이상)

### ■ 주요 검토내용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
2. 토지이용구상안
3. 대안
4. 평가항목, 범위, 방법 등

## 8 스코핑 절차 및 방법

### 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

1. **주체** : 환경부장관, 계획수립기관장, 승인기관장 또는 사업자
2. **구성** : 주민대표,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, 소속 공무원 (협의기관 및 계획수립기관) 등으로 10명 내외로 구성
3. **기능** : 환경영향평가 항목, 범위 결정, 협의내용의 조정, 설명회나 공청회 생략여부 등 심의

## 9 의견수렴

### ■ 목적

환경피해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, 계획수립과정의 투명성 보장, 계획의 타당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

### ■ 의견수렴 방법

1. 평가서 초안 제출 : 주관시장, 구청장, 승인기관, 협의기관 등

2. 공고, 공람 : 중앙 및 지방일간신문 각 1회 이상 공고,  
20일 이상 60일 이내

3. 설명회 : 사업자는 초안 공람기간 내 1회 이상 의무적

4. 공청회 : 주민 30인 이상 또는 의견제출 주민의 50% 이상 요구



## 9 의견수렴

### ■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

- 해당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지역 주민에만 한정
-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참여 곤란
- 사업자가 주민의견 반영여부 결정
- 워크숍 등을 통한 수의형 방식의 주민참여기법 부재

❖ 외국의 경우 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 범위는 제한 없이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(p6 참조)



#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는가? (도시기본계획) (p8 참조)

##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 절차도

도시·군기본계획입안  
(시장·군수, 자치구청장)

1 기초조사  
•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,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방향 등

2 도시·군기본계획(안) 작성  
• 자연·인문환경, 토지이용, 인구, 주거, 경제, 교통계획 등

3 주민공청회  
• 14일 이전 1 이상의 일간신문 공고 후 공청회 개최

4 의회 의견청취  
• 30일 이내 의견 제시

5 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
• 구성 : 15인 이상 25인 이하

6 도시·군기본계획(안) 승인신청  
• 도시·군기본계획도서 등

소요기간 최저 8개월 ~ 최대 12개월

도시·군기본계획 승인  
(도지사)

1 신청서 접수(도)

2 관련부서(기관) 협의  
• 농지, 산지, **환경**, 재해분야 등

3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(시·군)

4 종합검토보고(도시정책과)  
• 협의결과, 법령기준 등 검토

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
• 월 2회(수시) 개최

6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 
• 현지확인 및 심의

7 심의결과에 따른 승인계획 보고

8 승인통보  
• 승인 통보

9 승인통보 조치계획 제출(시·군)  
• 승인통보 조치계획 제시  
• 도시·군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제출

10 도시·군기본계획 승인 공고(시·군)  
• 도시·군기본계획 승인 공고

소요기간 : 최저 5개월 ~ 최대 10개월

5 ~ 8개월

3 ~ 4개월

2 ~ 5개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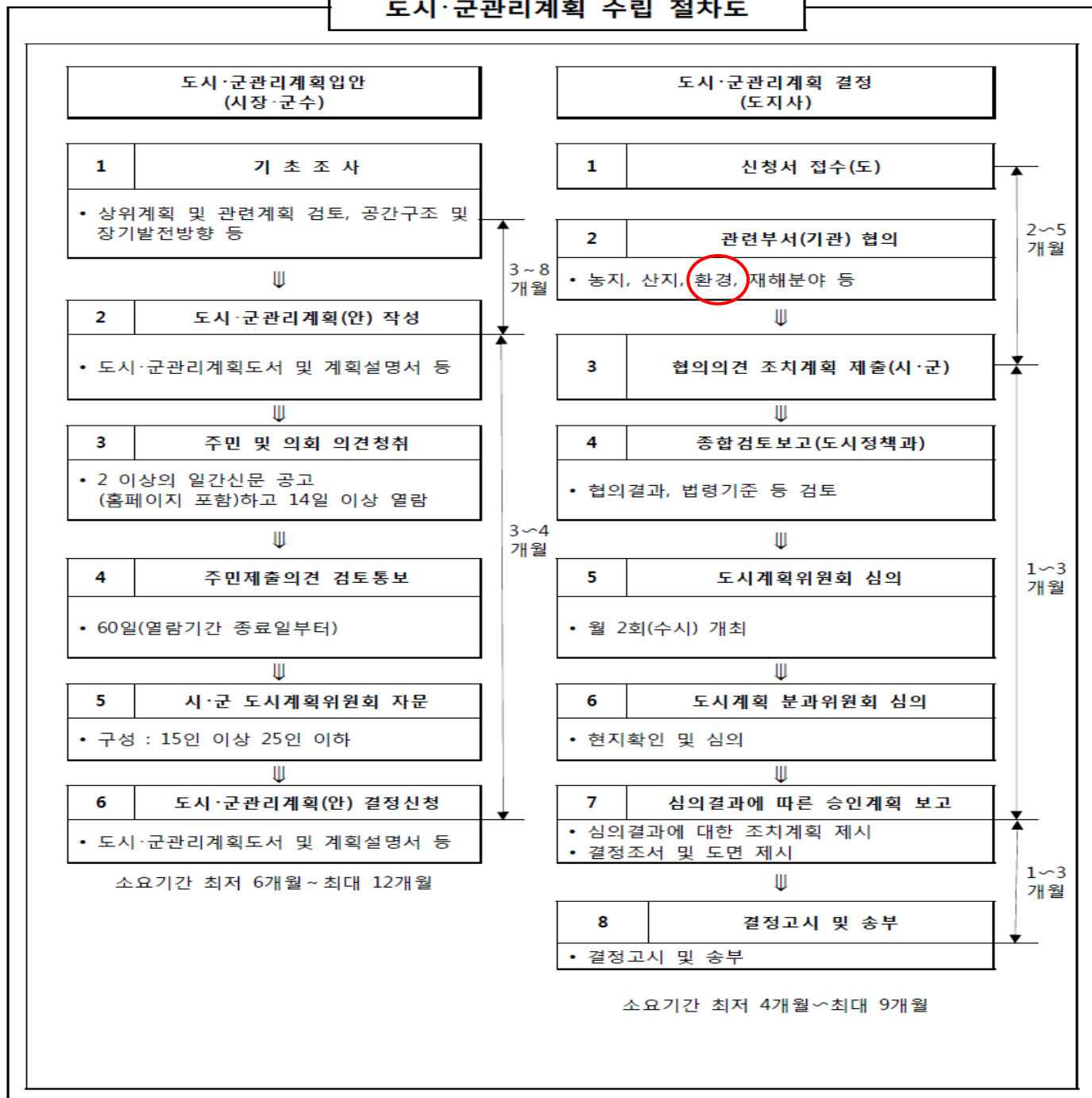
2 ~ 3개월

1 ~ 2개월



# 도시관리 계획과 전략환경 영향평가 (p9 참조)

## 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도





# 실시 계획과 환경 영향평가 (p10 참조)

##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

도시 계획 시설 결정	기초조사 (시장·군수)		• 환경성검토, 토지적성평가 포함
	도시·군관리계획(안) 작성 (시장·군수)		• 도시·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
	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(시장·군수)		• 지방일간신문(2이상) 공고 • 14일 이상 일반열람
	시·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		
	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 및 신청 (시장·군수)		•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(30일) • <b>사전환경성검토 협의</b> -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
	시·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		
	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·고시 및 열람 (시·도지사 / 시장·군수)		
시행 자 지정	지형도면 승인·고시 및 열람 (시장·군수)		•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2년 이내
	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집행계획 수립·공고(시장·군수)		•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년 이내 •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
실시 계획 인가	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(시장·군수)		• 민간시행자 : 토지면적(국공유지 제외)의 2/3이상 소유권 확보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/2이상 동의
	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(시행자)		• 설계도서, 자금계획, 공공시설 귀속 협의도서 등
	실시계획 서류 열람 (시장·군수)		• 지방일간신문 공고 • 20일 이상 일반열람
착공 및 준공	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통보(시장·군수)	법 제88조 제91조	•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• <b>환경영향평가 협의</b> -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-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-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
	착공계획서 작성 및 착공신고(시행자)		
	착공신고필증 교부(시장·군수)		
	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준공검사 신청 (시행자)	법 제98조	
	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공고 (시장·군수)	법 제98조	

❖ 이 절차도에서 도시  
계획시설결정을 위  
한 시·도 도시계획위  
원회 심의를 위한 전  
단계로서 '사전환  
경성검토'가 있는  
데 이는 위에서 언급  
한 현재의 '전략환  
경영향평가'를 말  
한다.



# 법률의 이해

- 국가법령정보센터
  - 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
  - 행정규칙(지침, 고시, 규정)
  - 판례
- 정부입법지원센터
  - 법제지식 - 입법기준/편람
  - 총칙규정, 보칙규정

**감 사 합 니 다**

